

광주지방법원 2022. 8. 19 선고 2021가단54844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렬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봉수

변 론 종 결 2022. 6. 24.

판 결 선 고 2022. 8. 19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소외 D 사이에 2018. 10. 17.자 금전증여계약을 10,836,51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피고는 원고에게 10,836,5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소외 주식회사 E(이하 ‘소외 회사’라 한다)는 2010. 6. 15. 주식회사 F와 사이에 대출금 5억 원의 대출약정을, 2015. 7. 21. 대출금 5억 원 및 10억 원의 대출약정을 각 체결하였는데,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소외 D은 소외 회사의 위 각 대출채무에 관하여 6억 5,000만 원, 1억 2,000만 원, 1억 8,000만 원을 한도로 근보증하였다. 그 후 소외 회사는 위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, F은 2017. 5. 30.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.

나. D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2015회단10221호로,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2018하합100253호로 각 회생파산 절차가 진행되었다. 피고는 위 절차에서 진행된 지적재산권 공매에서 입찰가를 50,100,000원(입찰보증금 1,000,000원 포함)으로 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, 2018. 10. 18.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과 사이에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파산관재인 명의 계좌로 위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2018. 11. 15. 지적재산권 이전등록을 마쳤다.

다. 소외 G는 D의 자녀이다. G 명의 계좌(이하 ‘이 사건 계좌’라 한다)에서 2018. 10. 1. 파산관재인 명의 계좌로 입찰보증금 1,000,000원이, 같은 달 17. 피고 명의 계좌로 49,000,000원이 각 이체되었다(이하 통틀어 ‘이 사건 이체금원’이라 한다)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8호증, 을 제1 내지 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 주장(청구원인) 요지

G 명의의 이 사건 계좌는 실제로는 채무자 D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이다. 따라서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 및 파산명의인 계좌로 이 사건 이체금원 50,100,000원이 이체된 것은 D이 피고에게 위 금원을

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
피보전채권액(회생변제계획상 변제기 도래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변제예정금)
10,836,517원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원고는, 이 사건 이체금원이 채무자 D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와 D 사이의
금전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이 사건 이체금원이 D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에 따른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, 원고가 제출한
증거들과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가 D이 실제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이어서 이
사건 이체금원이 D의 소유로서 D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
만한 증거도 없다.

따라서,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용태